

푸른도시국 '20년 1분기 예비비 사용 보고

「서울특별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」 제3조 (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) 제3항에 따라,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드립니다.

□ 예비비 사용근거

- 지방자치법 제129조(예비비), 지방재정법 제43조(예비비)
- 서울시 재무회계 규칙 제19조(예비비의 사용)

□ 1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: 1건 638,032천원 (2020.4.10.)

○ 예비비 사용 사유

- '13년 6월, 남산공원에서 자전거 이용 중에 부상을 당한 시민이 도로관리 부실을 이유로 서울시를 상대로 민사소송(손해배상청구)을 청구하였고,
- '19년 1월, 법원의 1심 판결 결과, 남산공원의 도로관리 책임이 일부 있다는 사유로 서울시 일부 승소(원고 60%, 서울시40%)를 선고하였음.
- '19년 2월, 원고 과실이 주를 이루는 사고이며, 우리시는 관리의무를 다하였으나, 과실비율이 과다 책정되었다고 판단되어 항소를 제기함.
- '20년 2월, 항소심 판결 결과, 원고 및 피고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금과 항소심 추가 인용금액을 지급할 것을 판결선고함.
- 해당 사건에 대하여 상고 검토한 바, 항소심 결과가 1심 결과를 모두 인정하였고, 상고시 과실비율에 대한 유리한 판단을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상고를 포기하고, 최종 판결금액을 지급하고자 예비비를 활용하여 원고측에 해당 판결금액을 지급함.
- 판결금액은 예산 편성시 소송결과 예측이 어려웠고, 판결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이자 발생이 지속되어 조속히 지급하여야 하는 시급성이 있어 부득이 예비비 6억 3천8백만원을 배정받아 집행함.